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2
----------	------

2020년 6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5월 25일 이병도의원(발의의원 17명)
2. 회부일자 : 2020년 0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06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활동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 될 것임.
- 그러나 노인 자리 수요와 업무량 증가에 비해 전담인력이 충분히 충원되

지 않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으며,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임.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적절한 처우와 근로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한 적절한 처우개선 및 근로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사항 검토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제4항)
 - 개정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근무 및 근무에 따른 급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표〉 노인일자리 담당자 배치기준

사업구분	배치기준	사업구분	배치기준
공익활동	참여노인 150명당 1명	시장형	참여노인 13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 130명당 1명	취업알선형	참여노인 100명당 1명
인건비 지원	월 1,850천원(13개월) / 성과급 1,257천원(연 1회)		

-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고용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갱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2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¹⁾임.
-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수행기관의 정규직 인력과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참고1 자료 참조)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신분 안정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표> 노인일자리 유형 및 현황

유 형	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량(명)※
계				76,000
공익활동	평균11개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월 27만원	60,700
사회서비스형	10개월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월 59.4만원 주휴,연차수당 (연 145.8만원) 별도	4,000
시장형	연중	만 60세 이상	1인당 연 267만원 (최대 월 25만원)	9,000
취업알선형 (구 인력파견형)	연중	만 60세 이상	1인당 15만원 (운영경비)	2,300

※ 사업량 : '19년 계획 75,544개(추경 638 별도) 대비 증 456개(0.6%)

-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및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임금표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서울시 사회복지 임금표를 적용받는 시설

1) <표> 000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직원 현황(예시)

구 분	직 원 총 계	시니어클럽 직원	일자리 전담직원	비고
계	20	6	14	
정규직	7	6	1	
비정규직	계		13	
	2년 이상		3	정규직 고용의무 발생했으나 계약직으로 근무 중
	2년 미만		10	

에 비해 종사자 임금의 76.4% 수준의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실정임.

<표> 서울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와 처우 비교(' 20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계	인건비 (연)	명절상여금 (봉급액의 60% 연2회)	초과수당(15시간) (통상임금1/209*1.5)	기타 수당 (복지포인트)	퇴직금
사회복지시설 (최저직급 1호봉)	33,124	25,464	2,547	2,741	250	2,122
노인일자리 담당자	25,307	22,200	1,257	없음	없음	1,850

*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5급(사회복지사) 1호봉의 76.4% 수준

-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근로안정성 보장을 위한 선제적 예산지원²⁾이 가능한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의 제도적 근거를 통해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존 인력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선제적 예산지원을 위한 추계(서울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임금표 적용)

대상인원 : 529명('20년 기준 *전국 4,535명)

지원예산 : 보수 월 1,850천원(13개월), 성과급(명절수당) 1,257천원 등 1인당 25,307천원

※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주5회 일 8시간, 주휴수당 포함

3 종합 의견

-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수행 종사자는 정규직 인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수행인력의 고용안정이 결국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에 상응하는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00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업무분장표(예시)

□ 2020년 1월 1일~12월31일

순번	직위	업무내용
1	관장(정규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운영관리 총괄 및 정책결정 업무 2. 전체예산 편성 및 집행 책임 3. 인사관리 업무(직원의 임면) 등 4. 현 사업과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5. 직원의 근무평정 및 근무태도 평가 6. 지역사회 대내외적 대표 업무 수행 7.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 8. 기타 관장의 책임에 속하는 업무
2	과장(정규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장 권위 시 직무대리 2. 관장의 행정업무 및 정책결정 보좌 3. 기관 사업 및 행정 총괄 4. 운영위원회 및 사업단별 대표자 회의 주관 5. 인사·예산·기관장비·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6. 사회보험 및 제증명관리, 비품관리 7. 회계 관리 -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 8. 사회복지실습,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관리 9. 기타 실장의 책임에 속하는 행정업무
3	팀장(정규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페이퍼팩토리 사업단 진행 2. 거래처 및 수요처 관리를 통한 매출관리 3. 회계 관리(시장형) -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 4. 기관물·전기·통신·소방·기계 설비 유지 관리 5. 기관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본관) 6. 사회복지 실습생 관리 7. 비품 및 문서관리 8. 신규사업 개발
4	팀장(정규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업무 총괄 2. 참여자 관리 및 수요처 관리 3. 새누리시스템 관리 4.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홈페이지 관리 5. 신규사업개발 6. 사회복지 실습생 관리 7. 기타 선임팀장의 책임에 속하는 행정업무
5	주임(정규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서비스형 다문화시설도우미, 청소년시설도우미, 장애인시설도우미, 노인맞춤돌봄 보조, 시니어컨설턴트, 노인시설도우미(동부), 노인시설도우미(서부) 2. 홍보(리플렛, 홍보자료, 소식지, 홈페이지 관리)

순번	직 위	업 무 내 용
		3. 바자회 및 후원 등 외부행사 4. 기관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분소) 5. 차량 관리(6465 스타렉스12인승) 6. 사회복지 실습생, 자원봉사자 관리 7. 문서접발송 관리
6	주임(정규직) ○○	1. 취업창업형 총괄관리 2. 시장형사업단: 파배기나라1, 파배기나라2, 배달의기수, 웰가제과, 새싹배움터, 소상공인지원사업 3. 인력파견형 사업 4. 거래처 및 수요처 관리를 통한 매출관리 5. 신규사업 개발
7	주임(일자리전담직원 중 정규직) ○○○ ※은평구비 지원으로 정규직 채용	1. 취업창업형 총괄관리, 더도울, 모두의 자원, 에스씨유통 사업진행 2. 참여자 및 판매처 관리 3. 신규참여자 상담관리 4. 새누리시스템 관리
8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	1. 사회서비스형: 베이비케어, 실버주방도우미 2. 참여자 및 수요처 관리 3. 신규참여자 상담관리 4. 새누리시스템 관리 5. 문서관리, 시설관리
9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	1. 공익활동형 : 급식도우미 북부, 황금빛공원서부 2. 참여자 및 수요처 관리 3. 신규참여자 상담관리 4. 새누리시스템 관리
10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	1. 공익활동형 : 실버경찰 북부, 실버경찰 남부 2. 참여자 및 수요처 관리 3. 신규참여자 상담관리 4. 새누리시스템 관리
11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	1. 공익활동형 : 급식도우미 중부, 공공서비스봉사자, 다문화시니어멘토링 2. 참여자 및 수요처 관리 3. 신규참여자 상담관리 4. 새누리시스템 관리
12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	1. 공익활동형 : 급식도우미 동부, 할머니문방구 2. 참여자 및 수요처 관리 3. 신규참여자 상담관리 4. 새누리시스템 관리
13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	1. 공익활동형 : 급식도우미 서부, 급식도우미 남부 2. 참여자 및 수요처 관리 3. 신규참여자 상담관리

순 번	직 위	업 무 내 용
		4. 새누리시스템 관리
14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	1. 공익활동형 : 행복한동행, 황금빛공원 동부 2. 참여자 및 수요처 관리 3. 신규참여자 상담관리 4. 새누리시스템 관리
15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	1. 시장형: 은평바둑학원, 새싹배움터 운영관리 2. 참여자 및 수요처 관리 3. 바둑학원 학생 모집 및 강사관리 4. 새누리시스템 관리
17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	1. 인력파견형 사업단 2. 시장형: 배달의 기수 3. 참여자 및 수요처 관리 4. 차량관리(1495) 5. 새누리시스템 관리
18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	1. 시장형: 소상공인지원사업, 더스토리 카페사업 2. 참여자 및 수요처 관리 3. 신규사업 개발 4. 새누리시스템 관리
19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직)	1. 시장형: 모두의자원 북부, 더도올(자원순환사업) 2. 바자회 및 후원 등 외부행사 3. 차량관리(4686) 4. 새누리시스템 관리
20	사회복지사(계약직) ○○○ (일자리전담직원직)	1. 시장형: 모두의 자원 남부, 에스씨유통 2. 신규참여자 상담관리 3. 새누리시스템 관리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2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병도, 김화숙, 오현정, 이동현,
김제리, 권영희, 홍성룡, 양민규,
박순규, 전병주, 이정인, 한기영,
최웅식, 권수정, 임종국, 성흠제,
김인호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일자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활동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 될 것임.
- 그러나 노인 일자리 수요와 업무량 증가에 비해 전담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종사자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으며,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이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적절한 처우와 근로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시장의 책무)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중 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